

발행인 · 서울특별시감 정 상 천
 편집 : 문화공보관 심계섭
 전화 75-7834
 인쇄 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
 전화 75-6090

제 750 호
 1980. 2. 5

시보

차 례

◎ 조 례

- 제 1400 호 :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..... 3
- 제 1401 호 : 서울특별시한강보전위원회조례..... 4
- 제 1402 호 :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..... 4

◎ 고 시

- 제 38 호 : 도시계획시설(여객자동차정류장)지적승인..... 6

◎ 공 고

- 제 35 호 : 환지계획변경공람공고..... 7

담당자	승인	인	감	서기장
Ching				서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

조 례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중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정 상 칙 령 1980년 2월 5일

◎서울특별시조례 제 1400 호

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1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1 조 (목적) 도시계획법 제 76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(이하 ' 위원회 ' 라 한다)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 제 1 항중 전단에 '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 60 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' 를 삽입한다.

제 4 조중 제 1 항 및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위원회의 위원은 11인 이상 17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②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

각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제 2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제 5 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
제 7 조 제 1 항중 ' 둔다 ' 를 ' 둘수 있다 ' 로 하고 제 2 항중 ' 5인 이내 ' 를 ' 3인 이상 5인 이내 ' 로 한다.

제 8 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' 제 11조 내지 ' 제 13조 ' 를 ' 제 9 조 ' 내지 ' 제 11 조 ' 로 한다.

제 8 조 (감사 및 서기) ①위원회에 감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.

②감사는 서울특별시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운영을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관계장으로 한다.

③감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제 12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12 조 (구 도시정비자문위원회) 구 청장이 시정에게 건의하는 도시계획 및 정비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' 구청장은 도시계획시설에 관계되는 공무원과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(4인 이내) 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제 13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13 조 (수당등의 지급)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자문위원에게는

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한강보전위원회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

1980년 2월 5일

◎ 서울특별시조례 제 1401 호

서울특별시한강보전위원회조례

제 1 조 (목적) 이 조례는 한강의 오염방지과 정화 및 자연풍치의 보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(이하 '시장'이라 한다)의 자문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한강보전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를 설치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.

- 1. 한강보전의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
- 2. 한강보전을 위한 홍보 및 계도에 관한 사항
- 3. 기타 한강보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 3 조 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,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위원 50인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 ②위원은 환경국장, 학계, 교육계, 언론계, 법조계, 문화예술계, 사회단체, 기타 유관기관과 시민대표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.

제 4 조 (준용) 위원회의 회의소집, 의결방법,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도행정자문위원회 조례규정을 준용한다.

제 5 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급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

1980년 2월 5일

◎ 서울특별시조례 제 1402 호

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

(별표제 2)

가. 급수사비용료요율표

구분 업종	1 전 1 개 월 기본요금		초 과 사 용 료	
	기본수량(㎥)	기본요금(원)	사 용 부 분(㎥)	㎥ 당 단 가(원)
제 1 종	30	5,500	31-200	270
			201-300	370
			301 이상	450
제 2 종	20	1,400	21 이상	170
제 3 종	15	400	16-30	50
			31-50	110
			51 이상	170
제 4 종	500	175,000	501 "	570
제 5 종	500	35,000	501 "	90
제 6 종	사용수량 1 당 110 원			
제 7 종	100	5,000	101 이상	50
제 8 종	사용수량 1 당 270 원			

※ 시설소화전 기본요금 월 1,000 원 (1년분을 1회에 징수할 수 있다) 으로 하고 연습사용료는 제 6 종요율에 의한다.

고 시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38 호

도시계획시설 (여객자동차정류장)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고시제 503 호 (79.12.5) 에 의거 시설 결정된 마포구 관내 도시계획시설 (1개 자동차정류장) 을

가. 지적 승인내역

구분	시 설 명	위 치	면 적	비 고
신설	여객자동차정류장	마포구상수동 62 번지일대	1,910 ㎡	정마운수
별첨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				

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도시 계획법제 13 조규정과 건설부고시제 463 호 (79.12.10) 의 권한위임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도시정비과 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 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0. 2. 6.

서울특별시장

공 고

◎ 서울특별시 공고제 35 호

환지계획변경공람공고

1. 장안평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일부 환지에정지에 대하여 환지계획변경사유가 발생되었기,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47 조 및 제 55 조의 규정에 의거 환지계획변경코자 동 법제 33 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14일간 공람에 공한다.

2. 환지계획변경도시는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보이고 있으며, 본 공고내용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한다.

1980. 2. 7.

서울특별시장

- 환지 변경 내역 -

- 사업명 : 장안평토지구획정리사업
- 변경면적 : 6,112.8평
- 변경위치 : 동대문구장안동 206의 21외 52필지
- 별첨도서 : 생략